

갈더마 공급업체 윤리 강령

GALDERMA SUPPLIER CODE

서문

갈더마는 피부과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혁신에 기초한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연구와 혁신에 주력하고, 고품질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책임지며 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전문가는 갈더마가 사업상 관계를 맺는 모든 업체로부터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기대합니다. 갈더마의 윤리 강령은 사업 수행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제시합니다. 공급업체 강령(이하 "강령")은 공급업체와 그 직원, 대리점, 하청업체(이하 "공급업체")가 갈더마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할 강령(아래 I 부터 VII 까지)을 명시함으로써 갈더마의 사업원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강령 요건을 직원, 대리점, 하청업체에게 알리고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령을 지키기로 한 공급업체는 갈더마와의 모든 기존 및 향후 계약과 업무관계에서 강령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 사업 진실성

법규 및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모든 해당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이익

공급업체는 모든 활동에서 공사를 불문하고 제 3 자로부터 업무 또는 기타 우위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개인적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중재인을 통해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으며 또한 제 3 자로부터 그러한 특별대우의 대가로 인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II. 환경

공급업체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제품이나 용역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국가의 해당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배출물을 줄이거나 없애고 천연자원(물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보호하며 유해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최소화하며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III. 노동 규범

징역 및 강제 노동

공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노동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율이나 통제의 방식으로 신체적 처벌, 감금, 폭행, 위협, 추행, 학대가 금지되듯이 계약노예 형태의 노동은 금지됩니다. 공급업체는 무보수 노동자나 계약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하청업체와 제품 생산을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미성년 노동

아동인권을 위한 국제협약(32 조)과 OIT 협약(138 조, 182 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급업체에서의 미성년 노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성년 노동은 해당 아동을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학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신체, 정신, 도덕,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시간

공급업체는 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와 관련해 모든 관련 법률과 법에 명시된 업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과 법에 명시된 업계 기준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국가 법률에 따라 우선하는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보상

공급업체 직원은 시간외 근무 및 특별수당 관련 계약과 사회보호관련 조건을 비롯하여 국가법 및 지역법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차별 금지

공급업체는 인재 채용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신체적 능력, 국적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IV. 안전과 건강 근무 환경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한 식수, 적절한 위생시설, 비상구와 필수 안전장비, 응급의료 이용, 알맞은 밝기와 장비를 갖춘 작업공간은 필수입니다.

해당 규범 및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성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용역은 법에서 규정한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갈더마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급업체는 갈더마의 품질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V. 동물 보호

공급업체가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할 업무 체계에서 동물 연구를 해야 할 경우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업계/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동물 실험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동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VI. 기밀성

공급업체는 일반인, 환자, 의료전문가, 직원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갈더마와 공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VII. 갈더마의 대표

제 3 자나 제 3 의 기관에 대해 갈더마를 대표하는 업체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특히 환자, 의료전문가, 당국자들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갈더마 윤리강령의 특성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VIII. 회계감사 및 공급계약 종료

갈더마는 공급업체가 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강령을 지키지 않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